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1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이용호·김성주·이원택

김경협 · 소병훈 · 신정훈

김수흥 • 박영순 • 양정숙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여전히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 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 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인 4천800만원은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1억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 1억2천만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